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00. ~ 0. 00.) 결과,

3) 행정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0. 특정활동(E-7)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제1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무

별표 1 제1호의 적용 제외 법 규정란 중 “제31조”를 “제31조, 제31조의2”로 하고, 같은 란 제3호(종전의 제2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의 “사업”을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종전의 제3호는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종전의 제2호)의 적용 제외 법 규정란 중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를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1조의2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금융 및 보험업	
바. 전문서비스업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카. 농업	
타. 어업	
파.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하. 소매업; 자동차 제외	

거.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너. 녹음시설 운영업	
더.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러.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머. 임대업; 부동산 제외	
버. 연구개발업	
서.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저. 협회 및 단체	
쳐.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별표 1 제5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다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제30조 및 제31조의2는 제외한다),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별표 35 제4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의2.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더의2.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한 안전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 칭한 경우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제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0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u> <u>전보건교육 대상) 법 제31조의2</u> <u>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u> <u>말한다.</u>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u>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u> <u>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u> <u>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u> <u>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0.</u> <u>특정활동(E-7) 및 20의2. 계절</u> <u>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u> <u>하는 사람</u>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u>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u> <u>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u> <u>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u> <u>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u> <u>사람</u>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u>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u> <u>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u> <u>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u>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